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○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신속한 긴급상황 복구를 위해 긴급신고 절차를 신설하고,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(전신주 등) 전도, 지반침하 등 긴급상황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상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제5조제2항)

나.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.(제6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959호

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

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(전신주 등)의 전도, 지반침하 등 긴급상황의 복구를 위해 시급하게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[제1호의2서식]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(이하 “긴급신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상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고서”를 “신고서 또는 긴급신고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45조제2항”을 “법 제45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4항 또는 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즉시 수리하거나,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신고 수리해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통보를 받은”을 “통보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

신고를 접수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긴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철도보호지구관리자”를 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2018년 7월 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1 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행위신고) ① (생 략) <신 설>	제5조(행위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(전신주 등)의 전도, 지반침하 등 긴급상황의 복구를 위해 시급하게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(이하 "긴급신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,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상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행위수리)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 1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 2. ~ 5. (생 략)	제6조(행위수리) ① ---------- 신고서 또는 긴급신고서----------. 1. 법 제45조제3항-----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.
③ · ④ (생 략) <신 설>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즉시 수리하거나,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신고 수리해야 한다.
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⑥ ---------- 제4항 또는 제5항----------.
⑥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에	⑦ ---------- 제6항-----

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별지 제2호서식(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)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0조(열차감시인 배치 등) ① (생 략)	제10조(열차감시인 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작업의 범위·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-- 통보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를 접수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행위완료의 확인)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2조(행위완료의 확인) ① 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긴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4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2024년 1월 1일---------- ---------- 12월 31일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
「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」

■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[별지 제1호의2서식] <개정 2023. 12. 27.>

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
신 고 인	성 명	생년월일
	기관명	대표자
	주 소	법인등록번호
신고사항	행위위치	
	긴급사유	
	행위내용	

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○○○○ 귀하

유의사항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